##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13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윤준병·박용갑·문대림

김교흥ㆍ허 영ㆍ이원택

주철현 · 송옥주 · 민병덕

서영석 · 강준현 · 김우영

박희승 • 백선희 • 정동영

김태선 · 허성무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 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실제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실질적 대응책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 • 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을 말한다)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 ① 제1
	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
	계기관"이라 한다)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을 말한다)의 위
	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를 제조
	<u>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국민보호
	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
	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u>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u> <u>여야 한다.</u>